

심사보고서

무인교통단속장비 과태료 수입의 지방세 전환 촉구 건의안

무인교통단속장비 과태료 수입의 지방세 전환 촉구 건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953
----------	-----

2025. 4. 30.(수)
정책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이상식 의원 등 14인

나. 발의일자 : 2025년 4월 11일

다. 회부일자 : 2025년 4월 14일

라. 상정일자 : 2025년 4월 22일

- 제42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이상식 의원)

가. 제안사유

- 전국적으로 교통법규 위반 단속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다수의 무인 교통단속장비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무인단속장비의 설치·유지·보수 비용은 전액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충당되고 있음
- 그러나 무인교통단속장비 운영으로 발생하는 과태료 수입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되지 않고 국고 일반회계로 편성되어, 지역주민의 교통 안전 개선과는 무관하게 사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시급함

- 이에 충청북도의회는 무인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수입을 지방세로 전환하여 실효성 있는 교통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도로교통법」 등 관계 법령을 개정하여, 무인교통단속장비 운영에 따른 과태료 수입을 국세가 아닌 지방세로 전환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
-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사고 예방 및 도로환경 개선을 위해 과태료 수입을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

3. 검토보고 요지

가. 제출배경

- 교통사고와 그에 따른 비용을 줄이려면 안전체계 구축과 교통안전 시설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투자가 필요하며, 교통질서 유지와 주민의 생명 보호를 위해 무인교통단속장비의 확충 및 효율적 운영은 필수적임
- 2021년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설치되고, 생활안전·교통·경비·수사 등에 관한 자치경찰 사무가 시·도지사가 관장하게 되면서 무인교통단속장비의 설치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운영은 경찰에 위탁하여 진행 중임
- 그러나 운영 예산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단속에 따른 과태료는 전액 국고로 귀속되고 있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장비 설치 및 유지 비용을 자체 부담하면서 교통안전 강화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음
- ※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전 지역이 동일함
- 또한, 정부가 전국적으로 무인교통단속장비를 통해 징수한 과태료는 매년 약 1조 원에 달하며, 이 중 20%만이 응급의료기금으로 출연되며, 나머지는 특정 용도 없이 정부 재량으로 사용되고 있음

- 이에 관련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을 통해 무인교통단속장비 과태료 수입은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해 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 및 건의하려는 것임

나. 건의안의 타당성 및 필요성

- 무인교통단속장비는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단속장비 설치 권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부족 등의 문제로 시설 설치 확대에 어려움이 있음
-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족은 지역 간 교통안전시설 격차의 심화와 지역 주민을 위한 교통안전 강화 및 교통환경 개선을 어렵게 하고 있음
- 따라서 무인교통단속장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설치되므로 이를 통해 부과·징수되는 과태료는 국고로 귀속될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요구는 매우 타당하며, 관계 법령을 개정하고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국회와 정부에 관련 내용을 강력히 촉구할 필요성은 충분함

다. 종합 검토의견

- (필요성) 교통안전은 지역의 문제이자 지역 주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으로 교통안전을 위해 투자한 재원이 다시 지역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무인교통단속장비 과태료의 지방세 전환이 필요함
- (시의성)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와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음에도 단속 과태료 수입의 전액이 국세로 귀속되는 것은 불합리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상황에 비춰 볼 때 무인교통단속장비 과태료의 지방세 전환 요구는 시의적절함
- (타당성) 이 건의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하는 무인교통단속장비 과태료의 지방세로의 전환을 위해 관계 법령과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려는 것으로 그 내용이 적절하고 타당함

4. 질 의 및 답 변 요 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건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무인교통단속장비 과태료 수입의 지방세 전환 촉구 건의안」

무인교통단속장비 과태료 수입의 지방세 전환 촉구 건의안

교통질서 유지와 주민의 생명 보호를 위해 무인교통단속장비의 확충 및 효율적 운영은 필수적입니다.

충청북도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교통법규 위반 단속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2025년 3월 기준 1,096대의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장비 구매 및 운영비로 총 76억 2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그 결과, 2022년부터 2024년까지 23,688건의 단속이 이루어졌으며, 총 1,280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태료는 모두 국고로 귀속되고 있어, 충청북도는 장비 설치 및 유지 비용을 자체 부담하면서도 교통안전 강화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무인단속장비 설치와 유지·보수를 직접 수행하지만, 단속을 통해 발생한 과태료 수입은 국고 일반회계로 편입되어 지역으로 환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전국적으로 무인교통단속장비를 통해 징수한 과태료는 매년 약 1조 원에 달하며, 2023년에는 역대 최대 금액인 1조 2,23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 중 20%만이 응급의료기금으로 출연되며, 나머지는 특정 용도 없이 정부 재량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을 통해 교통안전시설 개

선을 위한 특별회계를 운영했으나, 2006년 경찰청이 이를 폐지한 이후
교통안전을 위한 재정이 부족해졌으며, 지역 간 안전시설 격차가 심화
되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구조는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재
원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게 만들며, 지역 주민의 교통환경 개선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은 지역의 문제이자 지역 주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입니
다.

충청북도의회는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재
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관계 법령 개정과 제도개
선에 나설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도로교통법」 등 관계 법령을 개정하여, 무인교통단속장비 운
영에 따른 과태료 수입을 국세가 아닌 지방세로 전환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

둘째,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사고 예방 및 도로환경 개선을 위해 과
태료 수입을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관
련 제도를 개선하라!

2025. 4.

충 청 북 도 의 회